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광수(金光洙) 의원입니다.

- 본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1426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보편화에 따라 스마트워크 시대가 열렸지만, 정작 근로자들은 퇴근 전·후를 불문하고 ‘항상 연결(Online)’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아 ‘메신저 강박증’을 호소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야간과 휴일까지 직장에 나오거나 집에서 업무 처리해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것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퇴근 후 업무 카톡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되는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근로기준법」을 우회하는 새로운 형태의 연장근로가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들이 모색되고 있는 바, 서울시에서도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하며, 근무시간 이외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 공무원에게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제16조의2에 '사생활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